

신입생의 변

최춘근

중재부장 · 서울지법부장판사

약 반년전 어느 아침이었던가? 늘 하던 대로 그날도 사건 기록에 파묻혀 한참 골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법원장실에서 나를 잠깐 보잔다는 이야기였다. 무슨 일일까 다소 궁금해 하며 찾아가 보니, 다른 아닌 언론중재위원회 일을 해 볼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였다. 평소 생각해 본 일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딱히 거절하기도 무엇하여 그러겠노라고 대답을 하고서는 방에 돌아와 이런 저런 생각에 잠겼다.

모르긴 해도 아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도의 일, 즉 선거철만 제외하고 평소 한 달에 한 번정도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가 끝난 후 위원들과 함께 간단히 회식이나 하면 족하겠지 하고 짐작했다. 그러나 웬걸, 이러한 안이한 생각은 중재위에 처음 나간 날부터 여지 없이 깨지고 말았다. 처음에 맞닥뜨린 사건 자체가 소위 우리 언론사들의 성향, 역사 등과 관련된 것이어서 서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려는 기색이었다. 더구나 나 역시 언론역사에 관하여 별로 많은 지식이 없고 언론계에 오랫동안 종사해 온 다른 위원들도 사안이 사안이니 만치 매우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면 매우 조심스러워 하는 형편이라 수많은 재판을 해 왔던 나로서도 그리 쉽게 느껴지지 아니 하였다.

그러나 분쟁은 합리적인 선이라면 서로 타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평소 생각에서 나는 양측 주장 중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상대방에 양보를 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스스로 철회하도록 하면서 최대한 양측의 차이를 점점 좁혀 들어 갔다. 아울러 다른 위원들에게도 이 사건이 어려운 사건임에는 틀림없겠지만 중재부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최소화하여 직권으로라도 중재를 한다면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고 적극 주장하였다. 어쨌든 그러한 노력이 주효하였던지 우리 제3중재부에서 내 놓은 중재안에 대하여 양측의 이의신청 없이 그대로 확정되어 나의 첫 사건은 그런대로 성공한 셈이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있는 광화문에서 서초동 법원으로 돌아오는 차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하였던 것이 이렇게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빼앗기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앞으로도 이렇게 어려운 사건투성이라면 재판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나 않을까 하고 걱정이 앞섰다.

돌이켜 생각하면 벌써 약 10년 전에 언론과 관련한, 그 당시 꽤나 말도 많았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데 언론중재위원회 일을 맡으면서 옛 생각이 새삼 떠올랐다. 아마 지금도 상당수의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감사원의 모 감사관이 재벌의 부동산 소유 실태 보고서를 상부의 최종결재가 나기 전에 모 신문사에 전달, 폭로한 사건이다.

그 전달내용에 당시 최고위층의 인척이 포함되었다 하여 공연히 위 사안을 크게 보기 시작하였고, 급기야는 위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하여 그 감사관은 전격 구속되어 구속적부심까지 기각된 상태에서 나에게 배당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법처리(이 용어는 범죄의 혐의만 있으면 일단 구속부터 시키고 보자는 매우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나온 말)이어서 나를 포함한 법관들은 쓰고 싶지 않은 용어이지만 언론에서

계속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표현한다)와는 별도로 위 감사관은 파면 처분까지 받았는 바, 그 사람의 당초 동기가 어디에 있었는지(그 당시에도 한쪽에서는 정치적인 동기에 불과한 행동 라고 평하하였다) 장본인으로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대가를 치른 셈이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작 위 사건이 터지자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치유되지 않고 있는 망국적인 지역감정까지 결들여져, 여기서 언급하지 못할 가관인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재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정치 검찰 시비가 그 당시에도 맹위를 떨치고 있을 때이라 기소된 후 공안부에서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위 피고인을 아주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었던 반면, 그 보고서를 건네 받은 기자가 소속된 신문을 비롯 타 언론사의 기자들이 일제히 합세하여 그 사람의 행위를 감싸고 돌았다. 아마도 이는 취재원의 보호에서 나온 행동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별 것도 아닌 사안인데 소위 괘씸죄에 걸려 국가 서기관이 전격 구속된 데 대한 기자들의 양심의 발로로도 보인다.

물론 나에게도 음으로 양으로 많은 압박과 회유가 가해졌지만, 평소 좌우명대로 법관은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원칙에 따라 나는 이 사건을 처리하기로 하였다.

사안을 검토한 즉 재벌의 부동산이 많다는 내용의 보고서(물론 나중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지만 그 보유실태에 관하여 다소 오류는 있었다)를 결재 전에 신문사에 누출하였다 하여도 이는 절대로 공무상 비밀은 될 수 없다는 확신하에 보석 허가를 결정하였다. 도대체 우리 나라 재벌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실제로 그 당시 신청서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를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였다. 위 보석 결정은 주말인 토요일을 택하였다. 이는 만일 주중에 결정한다면 다음날 출근하여 동료 선후배 판사들을 법원에서 마주쳐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하여는 어떻게 된 노릇인지 당시 판사들 사이에서도 그 견해가 완전히 갈려 있어서 나는 차라리 주말을 지내고 사람들을 마주치고 싶은 심정이었고 또 기자들 및 전화 공세를 피하기 위한 일책이었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보통 사건 담당 판사가 보석 결정을 하면 바로 석방되는 것이 당연한데 검찰에서는 그렇게 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추측컨대 상급심에 가면 보석 결정을 취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이례적으로 즉시 항고를 하였고 그 항고이유서는 무려 100 여 페이지나 되었다. 이를 읽으면서 '항고 이유서를 쓴 공안부 검사, 참 고생이 많구나!'라고 느꼈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그 사람으로서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는 노릇이고 그것이 싫으면 사표를 낼 수밖에 없을 터이니 어떻게 보면 동정이 가기도 하였다. 당시 항간에는 보석 결정이 취소된다는 소문이 파다하였으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무리 최근 일부 언론에서 대전지법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을 기화로 법관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추측 보도, 허위 보도를 일삼고 있어 구체적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들로 하여금 마치 판사들이 무슨 큰 부정이거나 저지르면서 재판을 하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으나(적어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언론에서 다른 분야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사법부에 관해서는 그렇게 심하게 매도하지는 않았었다) 그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나는 판사들

중에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그 사건도 결국은 나의 결정이 유지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예상대로 보석 결정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그 동안 항고심에서 심리를 받느라고 그 피고인은 보석 결정일로부터 무려 20 일이 지나서야 석방될 수 있었다.

그 후 그 사건은 내가 결론을 내지는 못하였고 인사 이동 및 검찰의 재판 지연책에 따라 사건이 터진지 수년 후에야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검찰에서는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까지 상고하였지만 결국 무죄로 확정되었으며 이와 병행하여 진행된 위 감사관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역시 파면 처분이 취소 확정되어 그 후 직장에 복귀하였다고 한다.

취재원의 보호와 관련하여 옛날 내가 겪었던 일을 적다 보니 다소 장황하게 되었다. 이처럼 다소 상세하게 설명을 한 내면에는 최근 일부 신문이나 방송 보도에서 사법부에 관하여 너무나 악의적인 이야기들을 내쫓고 있어 이에 대한 항변일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언론중재위원회 일을 맡게되면서부터 서서히 감지되는 것은 언론인들은 역시 평소 내가 예상했던 대로, 일단은 독자들이 잘 읽어 주는(대부분은 독자들이 고소해 하는) 기사를 쓰고 싶어 한다는 점이고, 여기에는 남잘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되도록 깎아내리려는 우리 국민 특유의 정서도 한 몫 하는 것 같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나 막중하지 않은가. 흔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외에 제 4 부라고까지 하는 그러한 위치라면 정말 이제는 허위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과장보도, 추측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물론 언론에 대하여 진실에 입각한 보도만을 지나치게 요구한다면 사회 병리부분의 고발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저하시키게 될 지 모르지만, 고발 기능도 어디까지나 진실한 보도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언론 자유의 선진국가에서도 이미 확립된 원칙이다. 실제로 미국 등지에서는 오보나 허위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로 문을 닫은 중소 언론사가 적지 아니하다.

앞으로는 오보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세상 일이 어디 꼭 그렇게만 되겠는가? 보도나 방송을 하다 보면 과장보도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기자들의 공명심에 의하여 허위 보도를 하는 경우도 비단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언론 자유의 원조라 할 미국에서도 왕왕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어려워진 언론사들의 재정상태로 인하여 각 신문사나 방송사들은 앞다투어 독자나 시청자를 의식하여 좀 더 짜릿한 기사가 실리는 신문, 좀더 화끈한 방송을 만들기 위하여 어느 정도 무리를 할 것은 틀림 없다. 이에 반하여 국민들의 개인법익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또 기업경영 등이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언론에 대하여 관대하게 보아줄 여유도 없게 되었다.

내 생각으로는 앞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일이 적어지기는커녕 점점 더 중재신청건수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 그 몫은 우리 언론중재위원회에 몸 담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 뻔하므로 이에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역시 기왕 언론중재위원회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언론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아울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사를 써나가는 여러 기자분들 및 방송인들에게 뜨거운 격려를 보내고 싶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좋은 기사, 확실한 보도를 해 줄 것을 바라면서 언론중재위원회 신입생으로서 이 글을 맺는다.